##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481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민홍철·문대림·이기헌

복기왕 • 윤종군 • 염태영

양문석 · 황운하 · 김영환

정준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 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분 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 에는 해당 분쟁은 제외되어 있어 분쟁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①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	
항을 심사·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	
할 수 있다.	
<u> &lt;신 설&gt;</u>	1.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
	<u>증</u> 결과에 대한 분쟁
<u>1.</u> ~ <u>3.</u> (생 략)	$2. \sim 4.$ (현행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와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